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정춘생・차규근
이해민・강경숙・김준형
신장식・서왕진・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

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법률 제 호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군검사에게”를 “군사법경찰관리에게”로, “촉탁(囑託)”을 “촉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를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③ (생 략) 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 사법경찰관리----------. ② ---------- 군사법경찰관리에게 ---------- 촉탁----------.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공소청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① ~ ③ (생 략)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여야 ----. ⑤·⑥ (현행과 같음)